

# 제안 설명서

설 명 자: 디지털정보과장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-

# 제안 설명서

2024. 11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  
<http://www.dalseo.daegu.kr>  
[디지털정보과]

「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,

- 2024년 3월 5일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(승)」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“출자·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”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, 지자체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·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2조는 출자·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3조는 출자·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지도·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

- 본 조례안을 2024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
○ 2024년 10월 29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###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○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###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지자체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·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·출연기관의 사이버 공격·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오니,
-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### 감사합니다.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

의안 번호	0092 4115
----------	-----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11. 6.  
제출자: 달서구청장  
(디지털정보과장)

### 1. 제안이유

- 사이버안보 업무규정(대통령령) 개정(2024. 3. 5.)에 따른 지자체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·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정의(안 제1조)
- 나. 출자·출연기관의 범위 규정(안 제2조)
- 다.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규정(안 제3조)
- 라. 구청장의 지도·감독 규정(안 제4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1)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
  - 2)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, 제5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
  - 1) 입법예고(2024. 10. 2.~10. 22.)결과: 의견 없음
  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 - 3) 비용추계서: 비해당
  - 4)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  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  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**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**

부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사이버보안 업무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출자·출연기관의 범위)** 「사이버보안 업무규정」 제7조제2호의2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달서구”라 한다)가 설립하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.

**제3조(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)** 제2조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사이버보안 관리자 지정·운영
2. 사이버보안 교육
3. 자체 보안진단·점검
4. 사이버보안 실태평가
5. 사고대응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달서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
7.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

**제4조(지도·감독)**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출자·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

## 【관계법령】

### □ 사이버안보 업무규정

제7조(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)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제4호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
2의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

### 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조(적용 대상 등)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(이하 "출자·출연 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
제5조(출자·출연 기관의 지정·고시 등)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(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지방자치단체의 장[출자·출연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나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 이하 같다]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·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, 지정을

해제하거나,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. 다만,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, 지정을 해제하거나,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.

1. 출자·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: 신규 지정
2. 출자·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·폐지·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·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: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